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4797

제출연월일 : 2024. 10. 21.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사업계획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의"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 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의 승	①
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	
복을 명령할 수 있다.	
1. <u>사업계획의</u> 승인을 받은 날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의
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	
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